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 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폐지이유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의 근거법규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중 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내지 21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

III. 검토의견

- 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13조(설치의 지원)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제1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 중앙정부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97. 4. 10, 법률 제5332호) 당시에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는 일반회계에 소요예산을 직접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이 됨에 따라 2003. 12. 3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금관련 규정을 삭제한 바 있으며,

- 우리 구는 2002년 3월 19일 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이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추진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례 폐지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7040호)

第6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施設 및 設備을 이용하고 情報에 接近할 수 있도록 각종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13條 (設置의 지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의 便宜施設 設置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設置를 촉진하기 위하여 金融支援과 技術支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法人 및 개인이 이 法에서 정하는 便宜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設置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地方稅法등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第18條 내지 第21條 삭제 <2003.12.31>

※ 삭제전 관련조항 내용(법률 제6916호)

第18條 (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의 設置) 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設置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19條 (基金의 財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2.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履行強制金徵收額의 100分の 50
3. 基金의 運用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

②政府외의 者가 基金에 出捐 또는 寄附한 금액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地方稅法 기타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計算의 特例를 적용한다.

第20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1. 便宜施設 詳細標準圖의 작성등 研究開發事業
2. 便宜施設 設置등과 관련한 技術支援事業
3. 便宜施設에 관한 敎育 및 弘報事業

4. 便宜施設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및 補助事業

5.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便宜施設設置促進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第21條 (基金의 運用·관리) ①基金은 保健福祉部長官이 運用·관리하되, 그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基金에 대하여는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5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